

2016년도 국민건강임상연구 일반세부과제 공고

국민건강임상연구 코디네이팅센터는 일반세부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8월 16일

I. 지원내용

□ 지원분야

○ 아래 연구분야(1~5) 중 1개 분야를 선택하여 지원

- 연구 제목은 연구자가 더욱 구체화하여 작성

연구분야		연구 방법	지원기간 및 규모
지정주제	1. 치아 보철물 유형에 따른 성과 연구	의무기록 등 후향적 등록자료 구축연구	24개월 이내, 연간 1.3억원 이내
	2. 결핵으로 인한 호흡기계 후유증 치료의 임상적 유용성 연구	의무기록 등 후향적 등록자료 구축연구 등	24개월 이내, 연간 1.3억원 이내
	3. 녹내장 치료법의 비교효과연구	자료원 연계 등을 이용한 이차자료 분석연구	24개월 이내, 연간 0.8억원 이내
	4. 한국인의 비만 기준 설정 근거에 관한 연구	자료원 연계 등을 이용한 이차자료 분석연구	24개월 이내, 연간 0.8억원 이내
5. 자유주제	지정주제(1~4) 연구분야를 제외한 연구주제	의무기록 등 후향적 등록자료 구축연구	24개월 이내, 연간 1.3억원 이내
		자료원 연계 등을 이용한 이차자료 분석연구	24개월 이내, 연간 0.8억원 이내

※ 자유주제는 두 가지 연구방법(의무기록 등 후향적 등록자료 구축연구, 자료원 연계 등을 이용한 이차자료 분석연구) 중 택일하여 지원

※ 실제 연구에서는 1가지 이상의 연구방법을 이용할 수 있음

○ 자료원 연계 등을 이용한 이차자료 분석연구

- 연구목적별로 개별 추출된 자료 또는 다기관 자료를 연계하여 구축된 자료를 이용한 연구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암등록본부, 통계청 등에서 심의를 통해 제공되는 전국규모의 자료를 이용함

○ 의무기록 등 후향적 등록자료 구축연구

- 의무기록 조사 등을 통해 환자등록자료를 구축·활용한 성과연구

※ 상세사항은 공모안내(해당 사업설명) 참조

□ 지원내용

○ 식약처 허가 및 신의료기술 인증을 통과한 후 임상에 적용되고 있는 시술,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이용한 예방, 진단, 치료 및 재활요법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 중개연구의 T3, T4 구간(15페이지 참고)에 해당함

- 이차자료 분석연구, 의무기록 또는 이차자료원을 활용한 후향적 코호트 구축, 경제성 평가를 주요 방법으로 하는 연구

○ 두 가지 이상의 기존 예방, 진단, 치료, 관리 전략의 위해와 편익 등 효과성과 경제성을 비교하거나 환자성과(outcomes)의 여러 측면을 측정·평가하여 임상적, 정책적 의사 결정 근거를 산출하는 연구를 주요 대상으로 함

II.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 연구기관의 자격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129호, 2016.5.10.)>

제3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①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원급 의료기관 포함)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129호, 2016.5.10.)>
 제3조 ②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2명 이상 포함하는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연구책임자 자격

- 해당사업 제안요청서(RFP)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기관의 '정규 연구인력'이어야 함
- 비정규 인력이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경우, 해당 연구기관에서의 임용계약기간은 반드시 전체연구기간인 총 연구기간보다 길어야 하며, 해당연구기관의 임면권자(대학총장, 대표이사 등)가 발행한 '임용확약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전선별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자격 여부를 사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신청요령

□ 신청절차

- 연구계획서 서식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htdream.kr>)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 제출방법
 - 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 활용한 전자접수
 - ※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제출에 관한 공문 제출
 - 별도의 제본용 연구계획서 제출 없음

□ 접수마감

- 전산입력 및 연구계획서 제출 마감일

지원분야	전산입력 기한	일반세부 연구기관 전자접수 완료 (공문제출)
국민건강임상연구 일반세부과제	2016.09.19(월) 18:00	2016.09.20(화) 18:00

※ 전산입력기한 관련 접수마감 시간까지 전산입력 완료 엄수 (접수마감 시간이후 수정 불가)

IV.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 연구계획서 접수 → 사전선별심사 → 과제평가단 평가 → 임상연구 협의체 심의 → 예비선정과제 공고 → 신규과제 확정 및 통보 → 협약 체결 및 연구개시

□ 참여 및 신청 제한

○ 참여 제한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3조에 의거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연구개시예정일(2016.11.중) 현재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 연구개시예정일은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 보건복지부 및 타 부처 지원으로 이번 신청과제와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 신청 제한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임
- 신규과제 신청 시,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될 때에는 해당과제를 참여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
※ 위탁연구책임자 및 위탁과제 참여연구원은 신청 제한 대상이 아님

※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44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 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참조

- 연구계획서 제출 후에 참여 제한에 대한 사전요건심사를 실시하므로 일반세부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 전에 본인의 참여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총괄 및 세부 연구책임자가 참여율 제한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 신청과제가 탈락됨

- 연구계획서 제출 후에 참여 제한에 대한 사전요건심사를 실시하므로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 전에 본인의 참여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참여율 제한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 신청과제가 탈락됨)

V. 문의처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나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htdream.kr>)를 참조하거나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분야별 담당자 안내>

구분	담당자	연락처
국민건강임상연구 관련	곽민영 (공모 관련)	02-2174-2835 topicnhcr@neca.re.kr
	김혜진 (연구자료 관련)	02-2174-2833 topicnhcr@neca.re.kr
	김승태 (연구비작성 관련)	02-2174-2841 topicnhcr@neca.re.kr